

중 국

[판례 분석]

권리자의 적격 통지와 플랫폼의 합리적 주의의무의 범위

2026. 08. 26.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권리자의 적격한 침해통지가 없더라도 플랫폼이 침해를 알았어야 하는 상태에 해당하여 일정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이때 모든 라이브 콘텐츠에 대한 일반적 사전 심사 의무는 원칙적으로 부정됨. 다만 인기 저작물의 침해가 명백·반복되고 플랫폼이 경제적 이익과 기술·관리능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단순한 사후 삭제를 넘어 사전 예방 및 진행 중 대응조치까지 요구될 수 있음.

1. 현황

최근 중국에서는 온라인 생방송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다수의 이용자가 생방송 플랫폼을 통하여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한 영상저작물을 무단으로 방송하거나 다시 보기 형태로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중국 저작권법은 방송권을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작품을 공중에게 공개 전파·중계하는 등의 권리로 규정하는 한편, 공중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권리를 정보네트워크전파권으로 별도로 규정함. 이에 따라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의 침해 인식 여부 및 필요 조치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침해 저작물이 그 플랫폼에서 어떤 형식으로 제공되는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본문에서는 인기 드라마가 생방송 플랫폼에서 무단으로 방송되어 발생한 저작권 침해 분쟁 사례를 통하여 생방송과 다시 보기가 각각 어떠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경우 플랫폼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와 필요 조치의 범위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살펴봄.

2. 판례소개

사건 번호	1심	(2023)鄂01知民初57号
	2심	(2024)鄂知民终19号
관할 법원	1심	후베이성 우한시 중급인민법원(湖北省武汉市中级人民法院)

	2심	후베이성 고급인민법원(湖北省高级人民法院)	
당사자	A 회사		1심: 원고
	B 회사		1심: 피고
	C 회사		2심: 원심 피고
핵심 쟁점	1심	1. A 회사의 원고 적격 여부 2. B 회사가 A 회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해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3. B, C 회사의 법적 책임	
	2심	1. B 회사가 A 회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방송권 및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2. B 회사의 법적 책임	
판결 결과	1심	1. A 회사의 원고적격이 인정됨. 2. B 회사는 A 회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였음. 3. B 회사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A 회사의 경제적 손실 30만 위안 및 합리적 비용 10만 위안을 배상해야 함. C 회사의 법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2심	1. B 회사는 A 회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방송권 및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였음. 2. B 회사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A 회사의 경제적 손실 30만 위안 및 합리적 비용 10만 위안을 배상해야 함.	
관계 법령	· 저작권법(著作权法) 제10조 제1항 제12호,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2항·제3항 · 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 제14조, 제15조 ·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 민사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害信息网络传播权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제3조 제1항, 제7조, 제9조, 제12조 제2항, 제13조 · 민법전(民法典) 제1195조, 제1197조		
최종 판결일	2025년 3월 26일		

(1) 사건 개요

A 회사는 <군과 XX>드라마(이하 "사건 저작물"이라 함)에 대하여 저작권자로부터의 이용허락을 통해 중국 전국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취득하였음. B 회사는 이용자가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X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C 회사는 X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X 플랫폼에서는 다수의 방송 진행자가 개설한 라이브 채널에서 사건 저작물의 영상을 무단으로 실시간 방송하거나 다시 보기 형태로 제공하였으며, 그중 사건 저작물은 X 플랫폼 홈페이지에 설치된 영화·드라마 전문 항목에 게시되어 있었음. A 회사는 B 회사에게 수 차례 변호사 서한을 발송하여 침해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B 회사 및 C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2)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침해목록>을 B 회사에 전달하였고, B 회사는 이 목록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하였음. 그러나 그 후에도 X 플랫폼에서는 사건 저작물에 대한 또 다른 라이브 방송 침해행위가 발생하였고, B 회사는 이 새로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즉시 삭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해 A 회사는 1심 변론 종결 전에 증거를 확보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B 회사가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B 회사의 저작권 직접 침해 및 간접 침해 여부에 집중되어 있음.

(3)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B 회사는 X 플랫폼 이용자에게 자동전송, 정보저장, 검색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함. 따라서 사건 저작물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를 주장하는 A 회사의 주장에 따라 B 회사가 사건 저작물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직접 침해하였는지 아니면 이용자의 침해를 교사·유인하거나 방조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함.

① 직접 침해 여부

B 회사 플랫폼의 라이브 방송 진행자들이 X 플랫폼의 각자의 라이브 채널에서 사건 저작물의 영상 일부를 온라인으로 제공한 행위는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가 성립함. 본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의 직접 침해자는 사건 저작물의 영상을 공중에게 직접 제공한 X 플랫폼의 라이브 방송 진행자이므로 B 회사는 직접 침해자는 아님.

② 침해 교사 또는 유인 여부

B 회사가 "정이 가득한 단오절(浓情端午)", "4월 별빛 계획 혜택 패키지 행사(4月繁星计划权益礼包活动)", "여름의 별(夏日之星)"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게임 파트너, 라이브 방송 판매 등의 수익화 수단을 마련하여 라이브 방송 진행자나 이용자가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포인트를 획득하거나 이를 현금 등의 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은 인정됨. 이러한 조치는 이용자에게 플

랫폼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은 콘텐츠를 제작·제공하도록 장려하여 플랫폼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는 기능을 함. 그러나 이는 숏폼 동영상 플랫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운영 방식일 뿐 이 사건 저작물과 같은 특정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조치는 아님. 따라서 B 회사가 X 플랫폼 라이브 방송 진행자에게 침해행위를 유인하거나 교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③ 침해 방조 여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방조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주관적으로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이를 판단할 때에는 저작물이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통지를 처리하기 위한 편리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였는지, 상습 침해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함.

- 저작물이 홈페이지 등 서비스 제공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선택·편집·추천하였는지
-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저작물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 권리자로부터 유효한 침해통지를 받았는지

a. B 회사의 침해 인지 가능성 및 선택·편집·추천 여부

본 사건에서 A 회사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E 영상 플랫폼에서 사건 저작물의 재생량이 50억 6천만 회, F 영상 플랫폼에서 사건 저작물의 재생량이 94억 3천만 회, G 영상 플랫폼에서 사건 저작물의 숏폼 재생량이 58억 6천만 회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사건 저작물이 상당히 높은 화제성과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이 인정됨.

B 회사는 X 플랫폼의 이용자 화면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기업 신고 안내”를 게시하여 일반 대중이 동영상 신고, 라이브 방송 신고, 이용자 신고 등 다양한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여기에는 이용자의 “저작권, 상표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특허권 침해”에 대한 신고도 포함됨. 이는 플랫폼이 침해 신고를 위한 편리한 절차를 마련하였음을 의미함. 또한 X 플랫폼의 <규정 위반 이용자 및 콘텐츠에 대한 처벌 통지(对违规用户及内容的处罚通知)>에 따르면 한 달 동안 규정 위반 숏폼 동영상 188,733건을 삭제하고, 규정 위반 라이브 방송 채널 89,180건을 처리하며, 21,905개 계정의 라이브 방송 권한을 폐쇄하였음. 아울러 동영상 관련 신고 270,280건 및 라이브 방송 관련 신고 22,463건을 처리하고, 이용자 253,764명을 차단하였으며, 침해 관련 신고 721,905건을 처리하였음. 그 외에도 A 회사가 발송한 7차례의 변호사 서한에 대해서도 모두 신속하게 회신하면서 A 회사에 권리 귀속 증명, 이용자 ID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 이를 통해 B 회사가 침해통지에 대해 상시적인 처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었음이 인정됨. 사건 저작물은 모두 각 라이브 방송 진행자가 자신이 개설한 라이브 방송 채널에서 재생한 것이고, 해당 라이브 방송 채널은 플랫폼 홈페이지 등 눈에 띄는 위치에 존재하지 않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B 회사가 사건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선택·편집·추천하여, 그 콘텐츠나 전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b. B 회사의 경제적 이익 취득 여부

B 회사가 라이브 방송 진행자의 라이브 방송 수익 일부를 배분받았다는 점에 관해서 해당 수익은 본질적으로 플랫폼이 라이브 방송 진행자에게 라이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서비스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건 저작물 자체와 직접적인 대응 관계가 없음. 따라서 이를 근거로 B 회사가 사건 저작물로부터 직접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

c. A 회사 통지의 적격성 여부

<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 제14조에 따르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네트워크 이용자에게 정확히 통지를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적법한 침해통지에는 권리자의 신원정보, 침해에 관한 일차적 증거, 침해 이용자의 인터넷 주소 또는 이용자명, ID 번호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본 안건에서 A 회사가 B 회사에 발송한 변호사 서한에는 침해에 관한 일차적 증거, 침해 이용자의 구체적인 명칭 또는 인터넷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법정 침해통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B 회사는 해당 변호사 서한만으로는 A 회사가 이 사건 저작물의 권리자인지 확인할 수 없고 관련 이용자의 이름도 직접 알 수 없으며 해당 이용자의 침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파악하기도 힘들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 그러므로 해당 변호사 서한은 유효한 침해통지라고 볼 수 없음.

그러나 A 회사가 본 안건 소를 제기한 후 1심 법원이 2023년 2월 16일 B 회사에 소장과 증거자료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저작물의 권리귀속 증명, 침해 이용자의 명칭, 침해에 관한 초보적 증거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법정 침해통지의 요건을 충족하였음. 따라서 A 회사가 1심 법원을 통하여 B 회사에 전달한 본 안건 소송자료는 유효한 침해통지로 볼 수 있음.

d. B 회사의 의무 이행 여부

<정보네트워크전파권보호조례> 제15조에 따르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자의 유효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을 신속히 삭제하고 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차단하며 침해 이용자에게 그 통지를 전달할 법적 의무를 부담함.

반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자로부터 유효하지 않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에 침해에 관한 초보적 증거나 침해 이용자의 구체적인 명칭 또는 인터넷 주소 등이 없기 때문에 저작물 삭제나 링크 차단과 같은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음. 그렇더라도 침해행위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침해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통지를 공고할 의무를 부담함. 이를 통해 플랫폼 이용자에게 위험을 피하도록 주의를 주거

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침해 이용자에게 침해 위험이 존재함을 알리고 권리자의 저작물을 함부로 이용하지 말거나 이용을 중단하도록 알려야 함.

나아가 선량한 관리자의 관점에서 플랫폼의 정보관리 능력을 함께 고려하면 다수의 플랫폼 이용자들이 권리자의 저작물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통지에 기재된 이용자를 처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키워드 검색 등 기술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침해 이용자를 찾아내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본 사건에서 B 회사는 A 회사의 변호사 서한을 받은 후 해당 서한에 침해에 관한 초보적 증거 및 이용자의 번호 또는 ID 번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이용자에게 통지를 전달하거나 저작물을 삭제하고 링크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음. B 회사는 이에 대한 회신을 통해 A 회사에 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A 회사가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서도 계속하여 여러 차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B 회사에게 요구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B 회사는 침해통지를 공고할 의무를 부담함. 그러나 B 회사는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A 회사가 구체적인 침해 목록을 제출하기만을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만 하였음.

또한 A 회사가 본 사건 소를 제기하여, B 회사가 2023년 2월 16일 소장 및 증거자료를 송달 받은 이후에는 B 회사는 A 회사가 본 사건 저작물의 권리자이고 다수의 플랫폼 이용자가 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었음. 이때 B 회사는 증거자료에 기재된 라이브 방송 채널의 침해 이용자에 대해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링크를 차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법에 따라 취하여야 함. 그러나 B 회사는 본 사건 소송자료를 받은 이후 이러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결과 X 플랫폼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계속되었음. 따라서 B 회사는 X 플랫폼 이용자의 침해행위로 인해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함.

④ C 회사의 책임 여부

C 회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웹사이트에서 X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그러나 C 회사가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C 회사가 제공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서비스와 X 플랫폼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았음. 따라서 C 회사가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2) 2심 법원의 판단

A 회사가 본 사건에서 주장한 침해행위가 X 플랫폼의 이용자들이 라이브 방송 및 라이브 다시 보기 방식으로 사건 저작물을 제공한 행위이므로, A 회사가 주장하는 권리 범위에는 정보네트워크전파권뿐만 아니라 방송권도 포함됨. 따라서 1심 법원이 방송권을 판단하지 않고 정보네트워크전파권만을 대상으로 사건을 심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정정함.

우선 다시 보기 서비스에 관해서 B 회사는 X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 다시 보기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X 플랫폼 이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사건 저작물을 시청할 수 있게 하였음. 이와 같은 사건 저작물의 다시 보기 서비스는 라이브 방송 종료 후 저장된

영상을 이용자가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열람·재생할 수 있으므로 양방향 전송의 성질을 가지며, 그 제공 행위는 사건 저작물의 콘텐츠 자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함. 따라서 B 회사가 A 회사의 허가 없이 X 플랫폼에서 사건 저작물의 다시 보기 기능을 제공한 행위는 A 회사가 사건 저작물에 대하여 보유하는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다음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 관해서는 X 플랫폼의 여러 라이브 진행자들은 사건 저작물을 라이브 방식으로 공중에게 제공하였음. 라이브 과정에서 사건 저작물은 일방향으로 전송되고, 시청자가 이를 시청할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음. 이는 전송에 이용한 구체적인 기술이나 방식과 관계없이 일방향 전송에 해당함. 따라서 X 플랫폼의 라이브 방송 진행자가 사건 저작물을 실시간으로 송출한 행위는 방송권을 직접 침해함. 다만 방송권 침해행위의 직접 침해자는 X 플랫폼의 라이브 방송 진행자이며, B 회사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로서 실시간 라이브 행위 자체의 직접 침해자는 아님. 따라서 B 회사가 해당 침해에 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로서 부담하는 합리적 주의의무의 범위와 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해야 함.

① 라이브 방송에 B 회사의 책임 부담 판단 기준

네트워크 라이브 방송 산업이 오늘날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중요한 인터넷 산업으로 자리잡은 오늘날의 상황에서 라이브 방송 진행자들이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하여 사회·경제생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은 전통적인 정보전달 방식과는 다르며 그 특성상 상당한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특히 현재와 같은 트래픽에 의한 이익 추구 지향 인터넷 환경에서는 일부 라이브 방송 진행자들이 트래픽과 관심을 얻기 위해 권리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라이브 방송하는 경우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를 외면하고, 심지어 이를 이용해 상당한 이익을 얻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 업계의 도덕 규범을 형성하며, 인터넷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불리함. 따라서 라이브 방송 플랫폼이 부담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의 범위를 판단할 때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과 방식 및 그것이 침해를 유발할 가능성
-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갖추어야 할 정보관리 능력
- 라이브 방송 행위의 특수성
- 구체적인 사업모델
- 전파되는 저작물의 유형과 인지도
- 침해정보가 얼마나 명백한지
-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택·편집·수정·추천 등의 조치를 하였는지
-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였는지
- 침해통지를 쉽게 접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는지

- 침해통지를 받은 뒤 이에 적시에 합리적으로 대응·심사할 능력을 갖추었는지

② A 회사의 적격 통지 및 이에 대한 B 회사의 의무이행 여부

a. 적격 통지의 조건

<민법전> 제1195조에 따르면 권리자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증명과 권리자의 진실한 신원정보,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침해내용 및 침해에 관한 초보적 증거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통지를 관련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침해에 관한 초보적 증거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b. A 회사 통지의 적격성 여부

A 회사는 2022년 7월 28일부터 2023년 2월 11일까지 B 회사의 이메일 주소로 총 8통의 변호사 서한과 <침해목록>, <위임장> 등의 첨부자료를 발송하였음. 그러나 각 <침해목록>에는 사건 저작물만 기재된 것이 아니라 여러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고, 시기마다 대상 작품도 달라 B 회사가 사건 저작물을 신속하게 특정하기 어려웠음. 또한 해당 서한에 사건 저작물의 권리 귀속 증명이 첨부되지 않아 B 회사가 A 회사의 권리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사건 저작물 뒤에 "라이브 방송-종합-영화-드라마" 또는 "라이브 방송"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침해 라이브 방송 주체를 특정하지 않아 플랫폼이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신속하게 식별할 수도 없었음.

B 회사는 편리한 침해통지 접수경로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침해통지 및 그 처리에 관한 절차적 지침도 제공하는 등 이미 완비된 지식재산권 신고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 회사는 계속 유효한 통지를 하지 않았음. A 회사가 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1심 법원이 A 회사의 증거자료를 B 회사에 송달한 이후에야 B 회사는 구체적인 침해 이용자 및 사건 저작물에 대한 권리증명 등을 알게 되었음. 따라서 A 회사가 직접 발송한 위 변호사 서한들은 적격한 침해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c. 통지에 의한 B 회사의 의무이행 여부

A 회사가 적격한 통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B 회사는 A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변호사 서한을 받은 뒤 적시에 회신하면서 권리 귀속 증명, 이용자 ID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등 상시적인 처리를 하였음. 또한 B 회사는 A 회사가 1심 소 제기 및 1심 변론 당시 제출한 <침해목록>에 따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③ B 회사가 라이브 방송의 침해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X 플랫폼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B 회사가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A 회사는 침해행위를 발견한 뒤에도 B 회사에 적격한 통지를 하지 않았고, B 회사가 X 플랫폼에서 사건 저작물이 라이브 방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다른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음. 따라서 B 회사가 X 플랫폼의 라이브 방송 진행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실제로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

④ B 회사가 침해행위를 알았어야 했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B 회사가 X 플랫폼의 라이브 방송에 의한 사건 저작물 침해 행위를 알았어야 했다고 인정함.

첫째, 인기리에 방영 중인 영화·드라마 작품은 핵심적인 저작권 자산이면서 중요한 경쟁상 이익이기도 함. 이와 같은 상황에서 1심 법원에서 확인된 사실과 같이 사건 드라마는 재생량·조회수·인기도 중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저작물은 인기리에 방영된 영화·드라마 작품에 해당함.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통상적인 상황에서 일반적인 플랫폼 라이브 방송 진행자가 전문적이고 완성도 높은 영화·드라마 작품을 직접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한 인기 작품의 저작권자가 일반적인 라이브 방송 진행자에게 이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허락할 가능성 역시 거의 없다는 점을 당연히 인식해야 함.

둘째, B 회사는 X 플랫폼 홈페이지에 “영화·드라마” 전용 항목을 설정하여 라이브 방송 진행자가 영화·드라마 관련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시 보기 기능도 제공하였음.

해당 전용 항목의 명칭이 “영화·드라마”이고 실제로 다수의 영화·드라마 작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X 플랫폼 내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항목은 관련 이용자의 관심을 크게 끌어 클릭·열람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라이브 방송 진행자가 영화·드라마를 방송하도록 편리하게 하고, 장려하는 효과도 있음. 따라서 그 자체로 상당한 침해 가능성이 존재함.

그런데도 B 회사는 X 플랫폼에서 인기 영화·드라마 작품을 라이브 방송하려는 진행자에게 권리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거나, 무단으로 인기 영화·드라마 작품이 라이브 방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유효한 조치를 취하거나 제한을 두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 이러한 상황에서 B 회사가 X 플랫폼에 “영화·드라마” 전용 항목을 설정한 것은 라이브 방송을 통한 침해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현저히 높인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1심 법원은 일부 라이브 방송 채널의 표지 화면에 이 사건 저작물의 제목과 포스터가 표시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음. 이는 X 플랫폼 라이브 방송 진행자의 침해행위는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하며, B 회사가 일반적인 합리적 사람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통상적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함. 이와 같은 명백한 침해가 이루어진 인기 영화·드라마 작품에 대해서는 B 회사가 자신의 통제능력에 상응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함.

따라서 B 회사는 위와 같은 침해 라이브 방송의 존재를 발견했어야 하며, 일반적인 라이브 방송 진행자가 이러한 종류의 저작물에 대하여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 역시 인식했어야 함. 즉 이는 B 회사는 X 플랫폼 라이브 방송 진행자가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함.

⑤ B 회사의 의무이행 여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라이브 방송 진행자가 자신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상 권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하는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의 범위는 플랫폼의 사업모델, 서비스의 성격, 이 사건 저작물의 인지도, 침해 정도, 플랫폼의 기술적 능력,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또한 각 조치의 필요성, 실행 가능성, 합리성을 함께 고려하여 플랫폼이 적절하게 감독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함.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a. 플랫폼의 주의의무 범위

라이브 방송은 즉시성, 무작위성, 모니터링의 어려움을 가지며 콘텐츠의 양이 방대하고 실시간으로 급속히 변화함. 이 때문에 플랫폼이 이를 감독하는 데에는 객관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플랫폼의 라이브 방송에 대한 주의의무를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안 됨. 만일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방대한 양의 라이브 방송 콘텐츠에 대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률적으로 사전 식별·심사·필터링 조치를 요구한다면, 이는 사실상 일반적 심사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음.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반적 심사의무를 부과하면 운영비용이 증가하여 시장경쟁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적법한 콘텐츠까지 잘못 차단할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심사행위의 실질적인 실행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일반적 심사의무는 법률이 정한 플랫폼의 합리적인 주의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취해야 하는 필요한 조치는 침해행위의 지속 및 침해결과의 확대를 방지하는 데 충분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함.

b. 사건 저작물의 인지도에 대한 고려

사건 저작물과 같은 인기 영화·드라마 작품에 대한 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의 예측 불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짐. 또한 상술한 라이브 방송 행위와 라이브 방송 콘텐츠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B 회사가 A 회사의 <침해목록>에 따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동일한 라이브 방송 진행자가 반복적으로 침해하거나 새로운 진행자가 침해 콘텐츠를 방송하는 경우 플랫폼의 침해행위를 억제하기 매우 어려움. 그 결과 지식재산권은 언제든지 다시 침해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되고 동일한 권리자가 동일한 저작물과 동일한 플랫폼을 상대로 '통지-삭제 → 다시 통지-다시 삭제'라는 반복적인 순환에 빠질 수 있음.

이 안건에서도 B 회사가 A 회사의 변호사 서한을 받고 1심 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이미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X 플랫폼에서는 새로운 침해행위가 계속 발생하였음. 즉, B 회사는 X 플랫폼 내 인기 영화·드라마 콘텐츠의 풍부함을 유지하는 것과 침해행위를 억제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균형 있게 병행하지 못하였음.

c. 플랫폼의 경제적 이익 획득 여부

현재의 플랫폼 운영모델에서는 플랫폼이 라이브 방송 진행자의 인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트래픽을 유입시키고, 라이브 방송 진행자는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플랫폼과 라이브 방송 진행자 사이에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로 이익을 얻는 관계가 존재함이 인정됨.

본 사건에서 X 플랫폼은 여러 차례 행사를 개최하여 라이브 방송 진행자들이 플랫폼의 공식 미션을 수행하도록 장려하였고, 게임 파트너 등의 수익화 방식을 마련하여 라이브 방송 진행자가 행사에 참여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음. 아울러 X 플랫폼의 <라이브 방송 진행자 등록 약관>에서 정한 가상아이템 현금환산 방식에 따르면 X 플랫폼 이용자가 라이브 방송 진행자에게 가상아이템을 증정할 경우, X 플랫폼 역시 그 과정에서 영업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라이브 방송 진행자가 자신의 방송 콘텐츠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B 회사가 이를 직접 통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B 회사는 네트워크 라이브 방송 기술서비스제공자로서 라이브 방송 진행자가 가져오는 트래픽 효과와 시장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그 라이브 방송 콘텐츠의 저작권 적법성에 대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그렇지 않으면 이익과 책임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플랫폼의 감독 공백으로 인해 권리자의 저작권이 침해되며, 라이브 방송 관련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

d. B 회사의 기술적 통제능력

라이브 방송 플랫폼은 단순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일 뿐만 아니라, 플랫폼 콘텐츠 관리자이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라이브 방송 플랫폼 운영자는 자사 플랫폼의 운영 방식을 선택하고 침해위험에 대응하는 방식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라이브 방송 플랫폼은 그에 상응하는 기술적 우위를 가지며,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술적 조건과 관리능력 역시 갖추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음. 본 사건에서도 B 회사는 중국의 주요 대형 인터넷 플랫폼 중 하나로서 상당히 강력한 전송·관리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라이브 방송 진행자, 자원, 정보, 거래, 데이터 등의 요소를 일정 정도 통제할 수 있음이 인정됨.

⑥ B 회사의 간접 침해 성립 여부

본 사건에서 사건 저작물이 인기 영화·드라마 작품이고, B 회사가 X 플랫폼의 라이브 방송 행위로부터 상업적 이익을 취득하며 그에 상응하는 기술적 능력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B 회사가 플랫폼의 라이브 방송 침해행위를 알았어야 하는 상태에 있었다면, B 회사가 취해야 하는 실행 가능하고 필요한 조치는 단순히 권리자의 통지를 기다린 뒤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정되어서는 안 됨. 오히려 B 회사는 침해행위가 현재 초래하고 있는 현실적 위해와 향후 동일한 침해가 계속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미 발생한 침해행위를 중단시키고, 동일한 침해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 및 침해 진행 중 대응조치까지 취하여야 함. 또한 이러한 조치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실제로 침해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음.

B 회사가 1심 법원이 송달한 증거자료를 받은 후 <침해목록>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이나, B 회사는 사후적 처리조치만 취하였을 뿐 합리적인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의 침해행위를 알았어야 하는 상태에 이른 뒤에도 적절한 침해 진행 중 대응조치를 통하여 플랫폼의 라이브 방송 침해행위를 효과적이고 적시에 억제하지 않았음. 그 결과 본 사건 1심 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X 플랫폼에서 새로운 라이브 방송 침해행위가 계속 발

생하였고, A 회사의 적법한 권리는 합리적으로 보호받지 못함. 그 침해로 인한 손해 역시 중단되지 않고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음. 따라서 B 회사는 본 안건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A 회사의 방송권 침해에 대한 간접 침해의 책임을 져야 함.

3. 판례분석

1) 적격 침해통지와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의 구별

본문 판례에서 법원은 권리자가 적격한 침해통지를 하였는지와 플랫폼이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지'를 서로 구별하여 판단하였음. 1심 법원은 A 회사가 보낸 변호사 서한에 권리 귀속 증명, 구체적인 침해 이용자 및 초기 침해증거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유효한 침해통지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1심 소 제기 후 B 회사에 송달된 소장과 증거자료에는 이러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유효한 통지로 평가함. 2심 법원 또한 A 회사가 발송한 총 8통의 변호사 서한에 사건 저작물의 권리증명과 구체적인 침해 라이브 방송 주체를 특정할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적격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그러나 2심 법원은 적격 통지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B 회사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았음. A 회사가 적격 통지를 하지 않았고 B 회사가 실제로 침해행위를 인식하였다는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B 회사가 침해를 '알았음'은 부정하였지만, 사건 저작물이 높은 재생량과 화제성을 가진 인기 영화·드라마 작품이라는 점, 일반적인 라이브 방송 진행자가 전문적이고 완성된 드라마를 직접 제작하거나 권리자로부터 무료 라이브 허락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X 플랫폼의 눈에 띄는 위치에 "영화·드라마" 전용 항목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 라이브 방송 채널 표지에 사건 저작물의 제목과 포스터가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여 B 회사가 침해를 '알았어야 함'은 인정함.

이는 적격 침해통지와 플랫폼의 침해 인식 가능성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는 점을 보여줌. 적격 통지는 권리자가 특정 침해를 플랫폼에 알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통지가 부적격하다는 이유만으로 플랫폼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침해 위험까지 외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법원이 양자를 구별한 이유는 권리자와 플랫폼 사이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적격 통지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권리자가 침해대상과 권리관계를 충분히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플랫폼이 즉시 삭제 등의 조치를 부담하게 되어 플랫폼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음. 반면 적격 통지만을 플랫폼 책임의 전제로 삼는다면, 플랫폼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면 발견할 수 있는 명백한 침해까지 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방치할 수 있음. 따라서 법원은 권리자에게는 구체적이고 적격한 통지를 할 책임을 요구하면서도, 플랫폼에게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침해 위험에 대응할 책임을 별도로 인정함으로써 양자의 부담을 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저작물의 높은 인지도, 서비스 구조, 침해 표지의 현저성 등으로 플랫폼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침해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적격 통지가 없더라도 "알았어야 함"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따라서 본문 판례는 권리자에게는 침해내용을 정확히 특정한 통지를 요구하면서도 플랫폼에게는 통지 여부와 별도로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침

해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할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2) 일반적 사전 심사의무의 부정과 위험에 상응하는 합리적 주의의무

본문 판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2심 법원은 B 회사에 일반적이고 전면적인 사전 심사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침해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단순한 사후 삭제를 넘어서는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점에 있음. 2심 법원은 라이브 방송이 즉시성, 무작위성, 대량성 및 순간적인 변동성 등을 가지고 있어, 플랫폼이 모든 콘텐츠를 사전에 확인하기에는 객관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보았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대량의 라이브 콘텐츠를 모두 사전 식별·심사·필터링하도록 요구하면 사실상 일반적 심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고 이는 플랫폼의 운영비용을 증가시키고 정보교류를 제한하며 기술적 오판으로 적법한 콘텐츠까지 차단할 위험이 있음. 따라서 모든 라이브 방송을 일률적으로 감시·심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플랫폼의 합리적 주의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본문 판례의 사건 저작물처럼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인기 영화·드라마 작품의 침해위험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플랫폼에 일반적 사전 심사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저작물과 고위험 방송 채널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사전 예방 및 침해 진행 중 대응조치가 요구될 수 있음. 이는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주의의무 부과를 제한하면서도 저작권 보호의 실질적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높은 인지도를 가진 콘텐츠는 일반적인 콘텐츠보다 무단 라이브 가능성을 예측하기 쉽고 실제로 B 회사가 A 회사가 제출한 침해목록에 따라 일부 방송 채널을 삭제하였음에도 새로운 라이브 방송 채널에서 동일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계속 발생하였음. 법원은 개별 침해목록에 따라 그때마다 삭제하는 방식만 반복할 경우, 동일 권리와 동일 플랫폼 사이에 통지·삭제의 악순환만 계속될 뿐 저작권 침해위험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여기에 B 회사가 라이브 방송 진행자의 활동을 통해 트래픽과 시장상 이익을 얻고 가상아이템 정산을 통해 사업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를 운영하였으며, 대형 플랫폼으로서 상당한 콘텐츠 식별·관리 기술과 관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됨. 이에 따라 법원은 B 회사가 침해를 알았어야 하는 상태에 이른 경우 필요한 조치는 사후 삭제에만 한정될 수 없고 고위험 라이브 방송 채널에 대한 경고, 사건 저작물을 키워드로 한 검색, 라이브 방송 진행자의 이용허락 경로 확인, 반복 침해 이용자의 계정 제한 등과 같은 사전 예방조치 및 침해 진행 중 대응조치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함.

결국 본 판결은 플랫폼의 주의의무를 '전면적 사전감시'와 '소극적인 통지·삭제'라는 두 극단의 중간에서 위험의 구체성에 비례하여 설정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모든 라이브를 사전 심사할 의무가 없지만, 특정 인기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명백하고 반복되며 플랫폼도 이를 예측·통제할 능력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위험에 한정된 보다 적극적인 예방·대응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임. 이러한 판단은 라이브 방송의 특성상 플랫폼에 일반적인 사전 심사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침해 위험의 예측 가능성과 플랫폼의 기술적·관리적 통제능력이 높아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여 주의의무의 범위를 강화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4. 시사점

본문의 판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과 다시 보기 서비스로 인해 침해되는 저작권의 유형이 다르며 분쟁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인지도 및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인식 가능성과 기술적 통제 가능성에 따라 플랫폼에게 주어지는 합리적인 주의의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참고자료

판례
(2024)鄂知民终19号